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나17241(본소), 2021나6224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부당이득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김무겸, 이광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태선

변 론 종 결 2022. 1. 18.

판 결 선 고 2022. 2. 15.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5. 선고 2019가단5073679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 및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본소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0. 12. 14. 접수 제6293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및 예비적 반소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10,000,000원 및 그중 ① 14,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8. 2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1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2. 1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③ 7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및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여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되어야 한다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14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2. 13.까지 10년간의 이자 7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 명의의 X은행 계좌로 2010. 8. 26. 14,000,000원, 2010. 12. 13.

12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계좌의 예금 대부분이 ‘현금출금’이나 ‘ATM 출금’으로 수시로 인출되었는바(2011. 9. 28.까지 위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돈이 모두 전자금융, 현금인출 또는 ATM 출금으로 인출되었다. 갑 제7호증), 당시 만 84세로 문맹이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다가 늦은 나이에 상경한 원고가 이를 직접 관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원고는 인출 당시 아산시에 전입한 상태였다가 2019. 1. 21. 서울로 전입하였다. 갑 제2호증의 2), 예금 중 일부가 2010. 11. 6.경부터 2012. 9. 25.경까지 G가 거주하던 아파트 관리비나 G의 카드대금, G의 의붓딸에 대한 송금, 홈쇼핑 물품대금 등으로 사용된 점, G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하여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고 세금 등을 납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세금내역을 원고의 배우자 E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하여 왔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의 모 G가 원고 명의의 X은행 계좌를 실질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계좌에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상당액이 송금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자가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언제든지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채권 성립 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송금한 2010. 8. 26. 및 2010. 12. 13.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 10. 13.에야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이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본소제기 이후부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거나,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지 못하도록 장애사유를 야기한 원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않는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의 경위, 피고와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원고의 계좌로 위 매매대금을 송금할 당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나 시효의 중단행위를 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는바, 원고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의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창현, 판사 강영훈, 판사 노태현

[별지]

목 록

1. 충청남도 아산시 대 631㎡

2. 충청남도 아산시

목조 스테트지붕 단층 주택

1층 13.22㎡

1층 62.82㎡ 끝.

